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661

발의연월일: 2024. 11. 18.

발 의 자:이헌승·정성국·박성민

김 건 • 곽규택 • 김소희

김미애 · 서지영 · 서범수

박덕흠 • 윤상현 • 조경태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 사업을 하는 조합 (이하 "보건·의료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른 조합과는 달리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주체의 명의를 빌려 개인 수익을 위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등장하여 보건·의료조합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으며 조합원 및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음.

이에 「협동조합 기본법」과 같이 경영공시 의무를 보건·의료조합에도 적용함으로써 보건·의료조합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조합원 및 국민의 보건·의료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함(안 제48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보건·의료조합의 경영공시) ① 보건·의료조합은 매 회계 연도의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건·의료조합 또는 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 하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 2. 사업결산 보고서
-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보건·의료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의료조합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건・의료조합의

경영공시 또는 통합 공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88조제3항에 제3호의2ㆍ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2. 제44조(제64조 및 제7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위반하여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때
- 5. 제4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경영공시를 하지 아니한 때
- 6.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의료조합의 경영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8조의2(보건·의료조합의 경영공시) ① 보건·의료조합은 매회계연도의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건·의료조합 또는 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의활동 상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각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보건·

제88조(과태료) ①・② (생 략)

③ 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 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신 설>

4. (생략)

<신 설>

<신 설>

의료	조합	에 요	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보る	<u> </u> • 의	료조	합은	정기	당한
 사유 [;]	가 입		」ユ	요구	·에 1	따라
<u>야</u> 힌	<u>다.</u>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건·의료 조합의 경영공시 또는 통합 공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3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44조(제64조 및 제76조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때
- 4. (현행과 같음)
- 5. 제4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경영공시를 하지 아니한 때
- 6.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